

안전한 도시철도, 편리한 교통서비스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철도안전법 개정 알림

1.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-3193호(2017. 8. 8.) 『철도안전법 개정 알림』 관련입니다.

2. 위호와 관련하여, 철도안전법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, 관련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 개정 내용

-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 강화

· 음주제한 철도종사자의 범위를 철도안전법에 직접 규정(현행 대통령령) 하고, 운전업무 종사자, 관제업무 종사자, 여객 승무원의 음주제한 기준 강화(0.03%이상→0.02%이상)

· 음주제한 기준 위반시 모든 철도종사자의 처벌기준을 상향(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→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)

-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 신설 및 처벌기준 마련

· 음주, 약물 복용 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열차 내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처벌기준 마련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
○ 공포일 : 2017. 8. 9.

○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.

붙임 : 철도안전법개정안 1부. 끝.

법무처장

수신자 가1~가51,나1-2, 다1, 마27, 아1-3,나1-아19,나1-아19,자1-자5

과장 도금수

처장 전결 09/20
엄익철

협조자

시행 법무처-1834 (2017.09.20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
전화 02-6311-9084 전송 02-6311-4288 / dks0605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